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21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 및 2015.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조)

• 당초 : 수급자 → 변경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• 당초 : 의사상가족자 → 변경 : 의사자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붙임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○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'수급자' 기준을 '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'로,
- '의사상자가족'을 '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'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지원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